

제258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007년 3월 19일 (月)

심사보고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충청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 보고서

2007. 3.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7년 3월 12일
충청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7년 3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5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행정자치위원회

(2007.3.19)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 · 토론, 심사의결(수정)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1. 제안이유

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주시 지역내 유류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반도체 관련기업에게 대규모 시설투자를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나. 대청호 주변의 수산자원 개발을 통한 내수면어업 발전 및 수중생태계 보존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규모 기업 투자유치용 공장부지 매입(재산취득)

- (1) 위치 :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55번지 일원
- (2) 매입규모 : 2필지 $108,697\text{m}^2$ (32,880평)
 -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55번지, 공장용지, $98,905\text{m}^2$
 -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313번지, 공장용지, $9,792\text{m}^2$
- (3) 사업기간 : 2007. 3 ~ 4 (2개월)
- (4) 사업비 : 33,000백만원(도비 16,500 · 청주시비 16,500)
※ $108,697\text{m}^2$ 중 50%인 $54,348.5\text{m}^2$ 를 지분으로 취득

나.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신축

- (1) 위치 :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394-2번지 일원
- (2) 사업규모
 - 토지매입 : 17필지 $17,268\text{m}^2$ (내역 따로 붙임)
 - 건물신축 : 5동 $3,227\text{m}^2$ (사무실, 관리사, 실내양어시설 등)
 - 구조물 : 5식 $4,520\text{m}^2$ (양어시설, 침전조 등 부대시설)
- (3) 사업기간 : 2007. 3 ~ 2008.12 (2년간)
- (4) 사업비 : 3,995백만원(국비 50% · 도비 50%)

III. 검토보고 요지

(행정자치전문위원 연기봉)

가. 대규모 기업투자유치용 공장부지 매입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55번지등 공장용지 2필지 108,697m²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규모 시설투자 부지를 청주시와 각각 50%씩 공동지분으로 매입하여 제공함으로써 하이닉스가 빠른 시일내에 생산라인을 갖출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나

공장부지를 하이닉스가 직접 매입하지 아니하고 충청북도가 매입하여 제공하는 이유와 제공하는 방법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나.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신축

대청호를 비롯한 남부권의 내수면 수산자원 개발과 수중 생태계 보존 등을 담당할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부지 취득과 청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되나

내수면연구소의 입지조건으로는 풍부한 수량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사전조사 여부, 청사 부지 17,268m² · 청사 5동 3,227m² · 부대시설 5식 4,520m²와 사업비 3,995백만원의 산출근거, 그리고 신축예정지는 각종 행위가 제한되는 농업진흥지역(수질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농지로 청사 건립 가능여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한 재정투융자심사 여부 및 결과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대규모 기업 투자유치용 공장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 동의

나.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신축의 건은 사업규모 및 사업비 등의
보완이 요구되므로 부동의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200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단위 : 천원)

관련법령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0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뿐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p> <p>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p>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 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 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